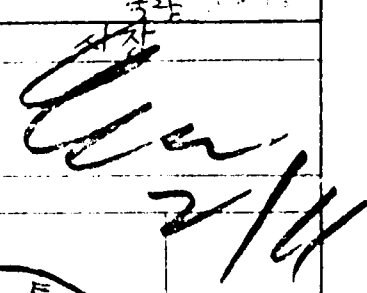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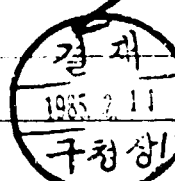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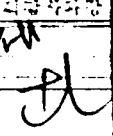


기안용지

문류기호 문서번호	도정 442-4442 (전화번호)		신청사항	4호 1항 국립 신청사항
처리기간	85. 2. 11	구청장		
시행일자	85. 2. 11	전 결		
부준연하	85. 12. 31			
보조기관	도시정비국장	도시정비과장	도시정비계장	  
기안책임자	이제철 (김병철)		구청장	
경유	각안 창조		발신	구청장
제 목	도시계획시설(시장)지적승인		 	
(제 1 안) 내부결재				
1. 강남구 논현동 10만번지 1번 (면적: 3,151㎡)에 서울특별시				
고시 제 786호 (84. 12. 26)로 도시계획시설(시장)결정된바				
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 1항 1호 규항의 일 규정이				
의거 별안과 같이 지적 승인하고 관계도서를 토지 소유자 및 이해				
관계인에게 공람코자 합니다.				
첨부: 가. 고시문(안) 1부				
나. 도면 1부				
(제 2 안)				
수신: 서울특별시		발신: 구청장		
창조: 시설 계획과장				
제 목: 통 건				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786호 (84. 12. 26)로 도시				
계획시설(시장)결정된 강남구 논현동 10만번지 1번 (면적:				

원본은 강관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
지부행정주무부 기안

1205-552-1A 1981. 12. 18

상식 잘서 강조

1.5#

원본에 조될

2317

2013

<p>(3.151 m²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1항 1호 천한 규정의 의거 별첨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고 보고 합니다.</p>	
<p>첨부: 가 고시문 사본 1부 나 도면 1부</p>	
<p>(제3안)</p>	
수신: 건설부장관	발신: 서울특별시장
<p>참조: 도시계획과장</p>	
<p>제목: 등 건</p>	
<p>"제2안 이기 시행"</p>	
<p>첨부: 가 고시문 사본 1부 나 도면 1부</p>	
<p>(제4안)</p>	
수신: 총무처 장관	발신: 서울특별시장
<p>참조: 법무담당관</p>	
<p>제목: 관보 게재 의뢰</p>	
<p>1. 도시계획시설(시장)지적승인에 따른 관보게재를 의뢰 함으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p>	
<p>가 관보게재구분: 고시</p>	
<p>나 관보게재건명: 도시계획시설(시장)지적승인</p>	
<p>다. 법적근거: 도시계획법 제13조</p>	
<p>첨부: 고시문 사본 2부</p>	
<p>(제5안)</p>	
수신: 서울특별시장	발신: 구청장
<p>참조: 공보관</p>	
<p>제목: 시보게재 의뢰</p>	



1. 도시계획시설(시장) 지적승인에 따른 시보개재를 의뢰하오나
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시보개재구분: 고시

나. 시보개재건명: 도시계획시설(시장) 지적승인

다. 법적근거: 도시계획법 13조

첨부: 고시문 사본 1부

(제 6 안)

수신: 서울특별시청

발신: 구청장

참조: 시민과장

제목: 관인 날인 의뢰

1. 도시계획시설(시장) 지적승인에 따른 관인 날인 및 고시
번호 부여를 의뢰하오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가. 고시문 사본 1부

나. 시행공문(건설부령 총무처) 각 1부

(제 7 안)

수신: 서울특별시 명동구 양평동 5가 106-1

등산로전(주) 대표이사 오 세 집

제목: 등전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6호(84.12.26)로 도시계획시설
(시장) 결정된 강남구 논현동 15번지 1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
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1항 1호 찬란위원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
하오. 증보 하의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가. 고시문 사본 1부

나. 도면 1부

(제 8 안)

수신: 수신처 참조

제목: 동건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844호(84.12.26)로 도시계획시설(상장) 결정된 강남구 논현동 15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1항1호 차한 위법 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되었기
됨이나 업무에 찬 있도록 할것

철부: 가 고분 선분 부

나 도면 부

수인처: 재무과 사무1·2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와 건설관리과
토목과 학동(장) 골.

결재
2000

고 시 문 (안)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도시계획시설 (시장) 지적승인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786호 (84.12.26)로 결정된 도시
계획시설 (시장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
1항 1조의 차한 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
표시한다

2. 관례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 정비과에 비치하여
열람인에게 보입니다

1985. 1.

서울특별시 장

가 도시계획시설 (시장)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 m ² (평)	비 고
시설	시장	강남구 논현동 105-7	3,157 (1,136.5)	총면적면적 39,026.35m ² (지하4층-지상4층)층 13,169.9m ² (지하층-지상 2층)를 시장결정

학 인 지 번	시정촌번호	강남구 222	동 105	번지(영) 211
동 (용 도) 지역	주거지	공업지	상업지	공업지
시 (용 도) 지구	통제	총제정비	(2 3 4 5)	승마장 고도(화도) (화도) 방화:아파트
계 획	도시계획시설	도로	미예저속	미예 정합니다.
		기타	(사 자)	결 정 지
사	도시계획사업	토지구획정리사업	일단의주택지 일단의공업용지	개발(도심주택거랑)
항	개발제한구역	구역내	일부저속	미 정합니다.
	지정제한건축선		미예저속	미 정합니다.
기	라	일부상업지역		

지적(임야)도 등본 지적(임야)도제 호축척 00분지

별지첨부 211
구충강

귀하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의 도시계획수첩을 확인합니다.
985. 1955. 1. 17
강 남 구 정



98-3

105-2

105-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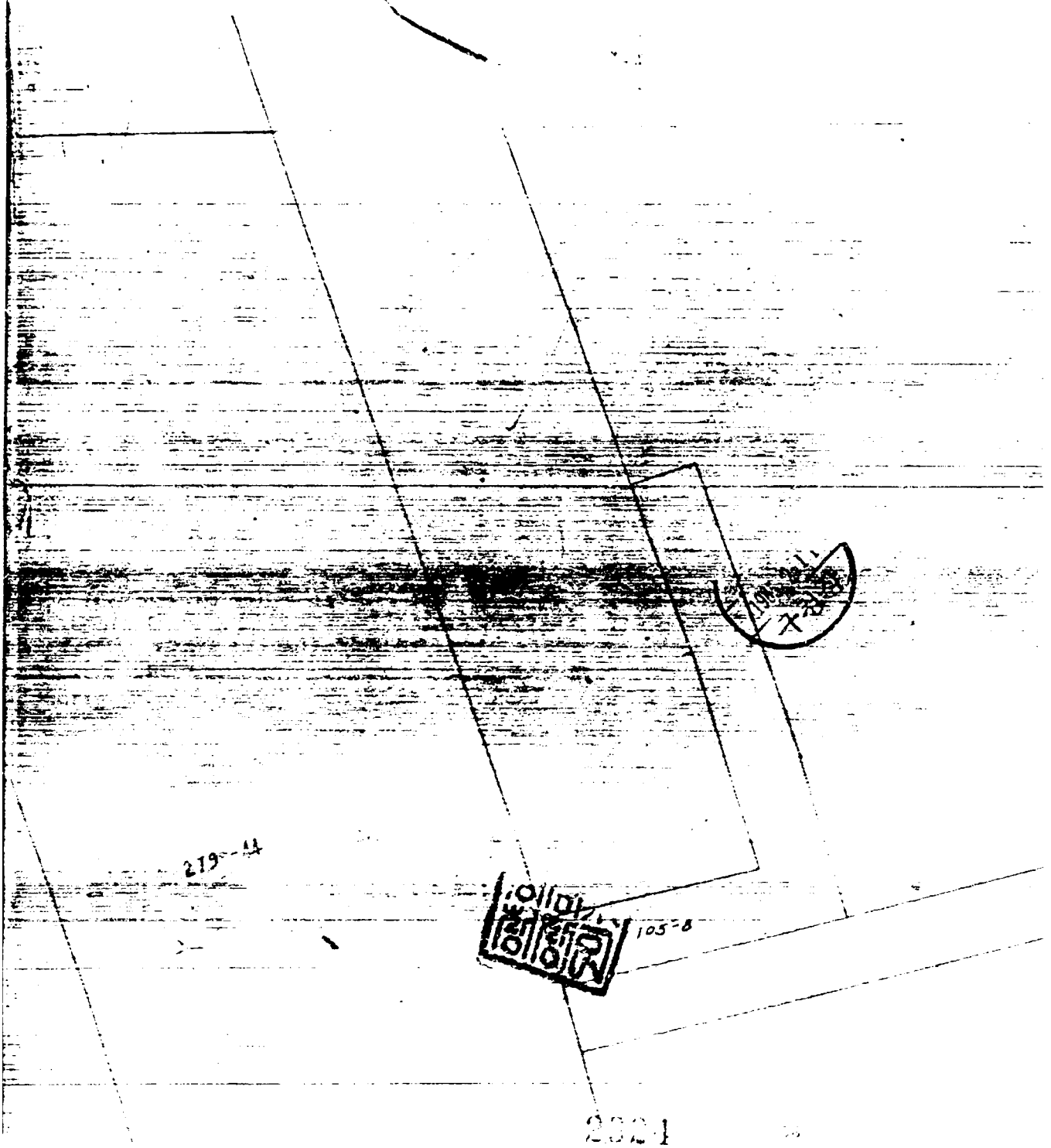
105-4

1985 2 11
105

273-25

2323

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적도(수치)



219-44

이대
105-8

2001

1:1,200

